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11.18.] [대통령령 제 22496 호, 2010.11.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시·군·구 지역 또는 하나의 사업장의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감독자의 업무 내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고용노동부령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그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함(안 제 10 조제 1 항제 6 호 및 제 4 항제 4 호).

나.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안 제 12 조제 4 항)

1) 생산·관리 시스템의 규격화 및 정보화로 사업장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므로 공동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같은 시·군·구 지역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

3) 인접지역의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재해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13).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1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 22496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 14 조제 1 항 본문에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 10 조제 1 항제 6 호 중 “고용노동부장관이”를 “고용노동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 4 항제 3 호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 12 조제 4 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 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제 12 조제 4 항 후단 중 “이들”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 1 호 및 제 2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 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제 45 조의 4 제 5 호부터 제 11 호까지를 각각 제 6 호부터 제 12 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검사 지원업무

별표 2 제 36 호 및 제 37 호를 각각 제 37 호 및 제 38 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 3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법 제 38 조의 4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작업

별표 4 제 6 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별표 6 의 2 제 1 호가록 4) 중 “기사 이상으로서”를 “기사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안전관리 분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람 2 명 이상

- 1) 관련 분야 기술사
- 2)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관련 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제 2 호·제 3 호·제 5 호·제 6 호·제 7 호(제 2 호, 제 6 호 및 제 7 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별표 1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